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4. 12. 11.(수)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기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87
----------	-----

2024. 12. 11.(수)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유재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5일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재목 의원)

###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안 제6조)  
○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필요성) 본 조례안은 급성장하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와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타당성)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의 및 체계를 구축하고 충북의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해당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상융합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제787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발의자	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유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7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 의 자 : 유재목,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안 제6조)
-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조례안예고 : 2024. 11. 18. ~ 2024. 11. 22.
- 협 의 :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
-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도정업무에 적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상융합산업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3.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4.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
5.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6.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보호)**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가상융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제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장비·시설 등의 공동 사용
  3.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0조(이용자 보호) 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2. 가상융합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3. 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4. 그 밖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②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③ 가상융합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메타버스 산업의 고속 성장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딥페이크 등 무분별한 산업 영역의 확장에 따른 도민의 피해를 방지

## 2. 비용 발생 요인

- 가상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3. 관련조문

- 안 제6조(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

나. 추계 결과 : 2025년부터 5년간 세출 118.6억원 정도 소요

- 가상융합산업 지원 3개 사업 : 118.6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비, 민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6,512,000	2,012,000	1,112,000	1,112,000	1,112,000	11,860,000
메타버지지원센터 운영	1,112,000	1,112,000	1,112,000	1,112,000	1,112,000	5,560,000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4,500,000	-	-	-	-	4,500,000
충북 제조 AI 기반 MX 플랫폼 개발 및 구축	900,000	900,000	-	-	-	1,800,000
재원 조달	6,512,000	2,012,000	1,112,000	1,112,000	1,112,000	11,860,000
국비	4,006,000	1,006,000	556,000	556,000	556,000	6,680,000
도비	2,123,500	623,500	556,000	556,000	556,000	4,415,000
시비	157,500	157,500	-	-	-	315,000
민간	225,000	225,000	-	-	-	450,000

## 6. 작성자 : 과학인재국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